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2. 2. 1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458호로 2022년 1월 24일 이규선 외 4명으로부터 발의  
되어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시행 2018. 1. 1.)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이 중복되어 삭제되는 등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 근거법령에 「자원순환기본법」을 포함하여 조문 정비  
(안 제1조)

나. 근거 규정 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개정(안 제2조 ~ 안 제3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2022. 1. 20.~ 1. 25.)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시행 2018. 1. 1.)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이 중복되어 삭제되는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본 조례의 위임 근거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등이 2018. 1. 1.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 운영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2017. 11. 28. 일부 조문이 삭제되는 등의 일부 개정되었음.

###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위임 근거법령에 「자원순환기본법」을 추가하여 위임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였고,
-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의 근거를 신규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 1. 1. 시행되어 조례의 근거 법률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이원화(二元化)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자원순환기본법 (2018.1.1. 시행)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8.1.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b>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p> <p>①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p>	<p><b>제4조 삭제</b></p>
<p><b>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b></p> <p>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침 및 추진목표</li> <li>2.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li> <li>3.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li> <li>4.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li> </ol>	<p><b>제7조 삭제</b></p>

5.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